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연락처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서울청	02.2250.5773	부산북부지청	051.309.1552
서울강남지청	02.3465.8496	창원지청	055.239.6584
서울동부지청	02.2142.8875	울산지청	052.228.1882
서울서부지청	02.2077.6172	양산지청	055.370.0931
서울남부지청	02.2639.2276	진주시청	055.760.6567
서울북부지청	02.950.9812	통영지청	055.650.1944
서울관악지청	02.3282.9052	대구청	053.667.6364
중부청	032.460.4405	대구북부지청	053.605.9153
인천북부지청	032.540.7984	포항지청	054.271.6835
경기지청	031.259.0258	구미지청	054.450.3553
평택지청	031.646.1184	영주지청	054.639.1151
부천시청	031.714.8787	안동지청	054.851.8036
안양지청	031.463.7353	광주청	062.975.6332
안산지청	031.412.1978	전주시청	063.240.3396
의정부지청	031.850.7633	익산지청	063.839.0036
고양지청	031.931.2871	군산지청	063.450.0532
성남지청	031.788.1576	목포지청	061.280.0142
강원지청	033.269.3587	여수지청	061.650.0241
강릉지청	033.650.2522	광주청(제주)	064.728.6132
원주지청	033.769.0821	대전청	042.480.6313
태백지청	033.550.8622	청주시청	043.299.1312
영월출장소	033.371.6233	천안지청	041.560.2865
부산청	051.850.6472	충주시청	043.840.4037
부산동부지청	051.559.6643	보령지청	041.930.6146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및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02.6711.2853	전북서부지사	063.460.3627
서울북부지사	02.3783.8342	전남동부지사	061.689.4936
강원지사	033.815.1021	전남서부지사	061.288.8706
강원동부지사	033.820.2521	제주지사	064.797.7511
부산지역본부	051.520.0586	충북지역본부	032.510.0539
울산지사	052.226.0584	경기남부지사	031.259.7132
경남지사	055.269.0545	경기북부지사	031.828.1934
경남동부지사	055.371.7563	경기서부지사	031.481.7533
대구지역본부	053.609.0542	경기동부지사	031.785.3371
대구서부지사	053.650.6839	부천시청	032.680.6540
경북동부지사	054.271.2043	대전북부지사	042.620.5635
경북북부지사	054.478.8022	충북지사	043.230.7126
광주지역본부	062.949.8758	충남지사	041.570.3433
전북지사	063.240.8551	본부 직업건강실	052.703.0643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목적

-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합니다.
- 따라서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가급적 빨리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야간작업”을 현행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시 대상

야간작업(2종)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가목의 경우 6개월간 누적 횟수가 24회이상(1년간 48회 이상) 나목의 경우 6개월간 누적시간이 360시간 이상(1년간 720시간) 수행하는 경우 대상이 됨

시행일('14.1.1)

상시 근로자 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주기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시행규칙 제98조 및 제99조, 별표 12의 3]

- 배치전
- 배치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 주기: 12개월

* 해당 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함

-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질환 및 검사항목

- 야간작업 관련 주요 건강문제인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소화기 질환, 유방암을 대상질환으로 하고, 각 질환별 구체적인 검사 항목 설정하였습니다.
- 질환별 검사항목은 1차 및 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고, 2차 검사는 1차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일 이전부터 야간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이후에는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기관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관련 Q&A

Q 01 야간작업 대상여부를 판단할 때 작업을 하지 않는 대기 시간, 휴식시간 등도 야간작업시간에 포함해야 되는지요?

A 01 근로기준법(제56조)에서 수당지급을 위한 야간근로 시간(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맞게 임금 지급과 상관없이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 대기 시간, 교대시간 등 실제 근무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야간작업이라 함은 야간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서 출근하여 일을 하기 위한 대기, 준비 등의 시간을 “가”, “나”목의 기준시간에 포함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Q 0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

A 02 업종 및 직종에 상관없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Q 03 야간작업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져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03 해당 작업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지난 6개월동안 근무한 시간 중 시행규칙 별표 12의 2의 4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야간작업을 24회 이상 또는 360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1년 동안 야간작업이 48회 이상 또는 720시간 이상이 되면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Q 0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반드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A 04 예, 그렇습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야간작업의 빈도 및 형태, 업무의 내용, 노동강도 등을 포함한 직업력 및 노출력을 조사하고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건강진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 특수건강진단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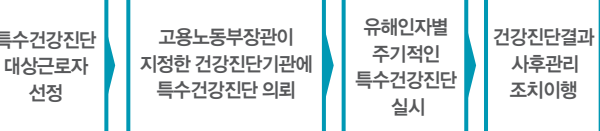
실시 대상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9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 참조)

- 유기화합물 (108종)
- 금속류 (19종)
- 산 및 알칼리류 (8종)
-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 야간작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14.1.1), 50인 이상 (‘15.1.1), 1인 이상 (‘16.1.1)
-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13종)
- 금속가공류 (1종)
- 분진 (6종)
- 물리적 인자 (8종)

실시 방법



실시 주기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구분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시기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먼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실시 후 조치사항

-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개입표’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결과표’는 사업주에게 송부합니다.
-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검진 의사의 사후관리 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벌칙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 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특수건강진단결과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측정이란?

- 작업환경측정이란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실시 대상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 대상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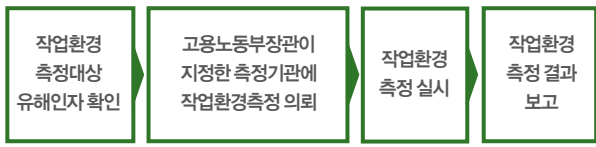
- 유기화합물 (113종)
벤젠, 톨루엔, 노말렉산, DMF, TCE 등
- 금속류 (23종)
구리, 납, 수은, 알루미늄, 주석, 산화철 등
- 산 및 알칼리류 (17종)
질산, 초산, 수산화나트륨 등
-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염소, 암모니아, 이황화가스 등
- 허가 대상 유해물질 (13종)
디클로로벤젠, 비닐염화물, 석면 등
- 금속가공류 (1종)
- 물리적 인자 (2종)
소음, 고열
- 분진 (6종)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먼분진 등

- 단, 임시작업이나 단시간작업 등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우리 사업장이 측정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시 주기

-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 측정결과 노출수준이 낮은 공정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측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시 및 보고 절차



- 사업주는 시료채취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측정결과를 보고합니다.
- * 단, 작업환경 측정기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전산으로 측정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측정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함

-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사업주는 신뢰성 있는 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취급화학물질, 작업주기, 근로자수 등 작업 정보를 측정기관에 정확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작업환경측정은 정상적인 작업상태 하에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벌칙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



-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와 업무상 질병 감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석면 등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지원 금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측정비용의 70% → 최대 40만원	1·2차
신규측정사업장은 전액지원(첫회에 한함) → 최대 100만원	검진 비용 전액
* 신규측정사업장: '12년 이후 측정·미 실시 사업장	
* 지원 범위: 2015년도 비용지원 대상 선정 후 측정 및 특검을 완료한 경우 지원함	

지원 절차



신청 기간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상반기(1~2월), 하반기(6월), 신규측정사업장은 수시 접수	연중 수시 접수 (재원 소진 시까지)
*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지원	

신청 방법



- 1 공단 홈페이지 → 2 사업안내·신청 → 3 [사업신청] 측정 특검 비용지원
- *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신청은 상호 연계 됩니다. 측정과 특검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52.7030.638 (측정), 643 (특검)